

제253회 거창군의회의 정례회

조 례 안 상 정
(6건)

거 창 군

--- 목 차 ---

의안번호	건 명	쪽수
2020-121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과)	1
2020-122	거창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재무과)	6
2020-123	거창군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문화관광과)	8
2020-124	거창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문화관광과)	14
2020-125	거창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행복나눔과)	16
2020-126	거창군 맞춤형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업기술센터)	22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0-121
----------	----------

제출연월일	2020. 11. 26.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거창군 조직진단 및 개편안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신규 및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담당을 신설·변경하고, 국가 및 지역 현안 추진을 위한 기준인력 증원에 따른 정원을 조정함

2. 주요내용

가. 국장 사무분장 변경(안 제5조제2항제3호·제6조제2항제3호)

- 1) 행정복지국장: 청년정책 신설
- 2) 경제산업국장: 산림레포츠, 힐링랜드 운영 신설

다. 정원 조정(안 제25조)

- 1) 총수 증37명: 730명 → 767명
- 2) 집행기관 증37명: 716명 → 753명

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안 별표 4)

- 1) 일반직 6급 이하 정원 증34명
 - 가) 현행: 656명(본청309, 의회11, 직속기관108, 사업소37, 읍40명, 면151)
 - 나) 조정: 690명(본청323, 의회11, 직속기관118, 사업소37, 읍41, 면160)
- 2) 지도직(지도사) 정원 증3명
 - 가) 현행: 25명(본청 0명, 직속기관25명)
 - 나) 조정: 28명(본청1명, 직속기관27명)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제24조·제29조·제30조·38조

나. 예산조치: 2021년도 증원 인력 예산 2,792백만원 확보예정

다.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0. 11. 2.~11. 23.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비용추계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인구정책, 교육진흥”을 “인구정책, 청년정책, 교육진흥”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중 “항노화 등”을 “항노화, 산림레포츠, 힐링랜드 운영 등”으로 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본문 중 “730명”을 “767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716명”을 “753명”으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행정복지국) ① (생략)</p> <p>② 행정복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p> <p>1.~2. (생략)</p> <p>3. <u>인구정책, 교육진흥, 평생학습, 청소년 보호육성, 도서관 관리·운영 등 인구·교육에 관한 사항</u></p> <p>4.~8. (생략)</p>	<p>제5조(행정복지국) ① (현행과 같음)</p> <p>② 행정복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p> <p>1.~2. (현행과 같음)</p> <p>3. <u>인구정책, 청년정책, 교육진흥, 평생학습, 청소년 보호육성, 도서관 관리·운영 등 인구·교육에 관한 사항</u></p> <p>4.~8. (현행과 같음)</p>
<p>제6조(경제산업국) ① (생략)</p> <p>② 경제산업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p> <p>1.~2. (생략)</p> <p>3. <u>산림사업, 화강석 육성, 산림보호, 공원·녹지 조성관리, 향노화 등 산림에 관한 사항</u></p> <p>4.~6. (생략)</p>	<p>제6조(경제산업국) ① (현행과 같음)</p> <p>② 경제산업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p> <p>1.~2. (현행과 같음)</p> <p>3. <u>산림사업, 화강석 육성, 산림보호, 공원·녹지 조성관리, 향노화, 산림레포츠, 힐링랜드 운영 등 산림에 관한 사항</u></p> <p>4.~6. (현행과 같음)</p>
<p>제25조(정원 총수)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u>730명</u>이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p> <p>1. 집행기관 정원: <u>716명</u></p> <p>2. 의회사무기구 정원: 14명</p>	<p>제25조(정원 총수)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u>767명</u>이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p> <p>1. 집행기관 정원: <u>753명</u></p> <p>2. 의회사무기구 정원: 14명</p>

[별표 4]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27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소계	농업 기술센터	보건소			
총 계		767 730	346 331	14	153 141	69 67	84 74	41	42 41	171 162
정무직		1	1							
일반직	소계	732 698	341 327	14	124 114	40	84 74	40	42 41	171 162
	4급	3	3							
	4~5 급	2	0		1		1		1	
	5급	37	15	3	5	4	1	3	0	11
	6급 이하	690 656	323 309	11	118 108	36	82 72	37	41 40	160 151
별정직 (6급 상당 이하)		1	1							
연구직 (연구사)		5	2		2	2		1		
지도직 (지도사)		28 25	1 0		27 25	27 25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가. 비용 발생 요인: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증가에 따른 추가 인건비 발생
- 나. 관련조문: 제25조(정원 총수)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합계
군비	2,792	2,792	2,792	2,792	2,792	13,960

3. 관련 의견

국가 및 군정 행정기능 강화에 따라 인력증가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2021년 기준)

- 가. 정원 총수 증원: 37명
- 나. 연간 인건비 증가 총액(2021년): 2,792백만원
 - ※ 2021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일반직 평균 단가: 75,477천원

작성자: 행정과장 곽승욱

거창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2020-122
----------	----------

제출연월일	2020. 11. 26.
제 출 자	거창군수

1. 폐지이유

조례로 위임되었던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이 법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위임됨에 따라 그 위임형식에 맞게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 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거창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를 폐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회계법」 제50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6조
「지방재정법」 제116조(2006. 1. 1. 개정 전)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0. 10. 28.~11. 17.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거창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20-123
----------	----------

제출일자	2020. 11. 26.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군민이 문화 창조와 향유의 주체가 되어 문화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기본이념 및 정의를 정함(안 제1조~제3조)
- 나. 문화도시 종합계획 수립을 정함(안 제5조)
- 다. 문화도시 조성 사업·지원 및 문화이장을 정함(안 제6조·제7조)
- 라. 문화도시지원센터 및 문화도시추진위원회를 정함(안 제8조~제16조)
- 마.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정함(안 제17조)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9조·제22조, 「지방재정법」 제17조
- 나. 예산조치: 2021년 225백만원 확보예정
-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0. 9. 11.~10. 5.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비용추계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거창군을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문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발전과 군민의 문화적 삶을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목표로 추진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군민 주도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2. 군 고유의 문화가치 증진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3. 문화의 창의성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
4. 문화적 도시재생과 접목한 사회혁신 제고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도시”란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등 군의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군민이 문화 창조와 향유의 주체가 되어 문화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문화도시 종합계획 수립)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문화 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거창군 문화도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일반 군민과 문화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은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에 따른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으로 같음할 수 있으며, 「거창군 지역문화진흥 조례」 제5조에 따른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과 연계 또는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사업 및 지원) ① 군수는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문화도시 기반 조성
2. 종합계획에 따른 세부 실행
3. 문화도시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4.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5. 문화도시 홍보
6. 그 밖에 군수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문화이장 운영) ① 군수는 지역에 대한 관심이 많고 봉사 정신으로 지역 활동에 앞장서는 군민을 문화이장으로 선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이장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지역 내 문화자원 및 문화인력 조사
2. 마을 및 지역의 각종 문화사업 계획과 시행 과정에서 자문 역할
3.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주민홍보
4.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사항

제8조(문화도시지원센터의 설치) ① 군수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거창군 문화도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역문화 진흥과 관련이 있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문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문화도시 구성에 관한 주요시책과 종합계획 수립
2. 종합계획의 추진·평가 등
3. 문화와 도시 분야(도시계획·도시재생·도시경관 등을 말한다) 간 정책 조정
4. 문화도시 구성을 위한 군민 제안사업 검토
5.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도시 업무담당 국장과 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문화, 예술, 역사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문화도시 및 문화 재생사업 관련 전문가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도시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군수는 문화도시 기반 구축을 위하여 조성된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그 재산을 관리·운영할 능력이 있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가. 비용 발생 요인: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비용 발생
- 나. 관련조문: 제6조(사업 및 지원)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예비사업 (2021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합계
군비	225	1,022	1,095.5	1,109.5	1,144.5	1,151.5	5,748

3. 관련 의견

문화도시 기반 조성을 위한 마중물 사업 및 문화도시 지정과 관련된 예비사업과 지정 후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문화도시는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하는 문화도시 지정절차 및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부장관이 지정한 도시로 문화도시 지정 후 5년간 총사업비 최대 200억원(국비50%, 지방비50%) 규모로 지원되는 사업임
※ 2021년 예비사업 후 2022년 지정되는 것을 가정하여 작성한 자료임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1. 기반조성 분야: 1,493백만원
 - 2. 농촌 분야: 1,697백만원
 - 3. 생태 분야: 1,235.5백만원
 - 4. 사람 분야: 1,322.5백만원
- ※ 거창 문화도시 조성계획상 4개분야 37개 사업의 군비 부담분임

작성자: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거창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20-124
----------	----------

제출연월일	2020. 11. 26.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자치분권 확대를 위해 지방으로 이양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사무였던 노래 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법령 위임범위에서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임조례 표현방식에 맞게 목적을 정함(안 제1조)

나.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1) 노래연습장업자의 연 교육 시간: 3시간

2)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대리참석: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

⇒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삭제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항의 내용

3) 교육의 통지: 교육 시행일 7일전, 교육 일시·장소·내용 등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 내용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시행 2021. 1. 1.)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0. 11. 2.~11. 23.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문화체육관광부 참고자치법규안 반영(법제처 컨설팅)

거창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연 3시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교육을 하려는 경우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 일시·장소·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20-125
----------	----------

제출일자	2020. 11. 26.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학교의 정규교육과정 시간 외에 보호자에 의하여 안전하게 보호되기 어려운 시간의 아동에게 온종일 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정의·책무·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정함(안 제1조~제4조)
- 나. 온종일돌봄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정함(안 제5조)
- 다. 온종일 돌봄 지원사업, 우선순위를 정함(안 제6조·제7조)
- 라. 온종일 돌봄시설, 비용부담을 정함(안 제8조·제9조)
- 마. 재정지원을 정함(안 제10조)
- 바. 지역돌봄협의체 기능·구성·운영 등을 정함(안 제11조~제15조)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9조·제22조, 「지방재정법」 제17조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0. 11. 2.~11. 23.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초등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안전한 보호를 위하여 온종일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온종일 돌봄”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 시간 외에 보호자에 의하여 안전하게 보호되기 어려운 시간에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이나 다음 달에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아동(이하 “아동”이라 한다)에게 제공되는 제6조의 교육·보호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온종일 돌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군수는 온종일 돌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온종일돌봄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온종일 돌봄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온종일 돌봄의 추진 과제 및 방법
3. 온종일 돌봄의 예산 지원 방안
4. 온종일 돌봄의 활성화 및 제도개선 방안
5. 그 밖에 온종일 돌봄에 필요한 사항

제6조(온종일 돌봄) ① 제2조에 따른 교육·보호 등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말한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등교 전 돌봄, 방과 후 돌봄, 방학 돌봄, 휴일 돌봄, 긴급 돌봄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영양의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아동의 건강 증진 및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육·문화 활동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관련 지원
- ② 군수는 법정 감염병 등으로 다른 사람의 안전 또는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온종일 돌봄 지원을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제7조(온종일 돌봄 우선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온종일 돌봄을 우선 지원한다.

1. 초등학교 저학년
2. 맞벌이 가정
3. 양육하는 18세 미만 자녀 수
4. 아동 별 온종일 돌봄 필요 시간
5. 그 밖에 군수가 우선 온종일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온종일 돌봄시설 설치·운영) ① 군수는 온종일 돌봄을 지원하기 위하여 온종일 돌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온종일 돌봄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온종일 돌봄시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온종일 돌봄 비용부담) ① 군수는 온종일 돌봄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온종일 돌봄을 제공받는 아동(이하 “돌봄아동”이라 한다)의 보호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가. 돌봄아동의 급식·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
 - 나. 돌봄아동의 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체험 비용 등
- ② 제1항에 따른 비용부담 대상 및 금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재정 지원) 군수는 온종일 돌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온종일 돌봄시설 마련·확충 및 지원
2. 온종일 돌봄 프로그램 운영 등
3. 온종일 돌봄시설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돌봄아동의 급식비 또는 간식비
5. 온종일 돌봄시설 간 또는 지역 내 연계·협력

제11조(지역돌봄협의체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수립
2. 온종일 돌봄 지원 사업
3. 온종일 돌봄 수요에 맞는 균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협의체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담당부서장, 지역아동센터 담당부서장, 거창교육지원청 초등돌봄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거창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사 등
2. 아동 돌봄 시설 관계자
3. 돌봄 기관 이용 학부모 등의 보호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체에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온종일 돌봄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협의체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협의체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협의체는 민관협력 온종일 돌봄 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온종일 돌봄시설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으며,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지역아동센터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거창군 지역돌봄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부터
기산 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거창군 지역돌봄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거창군 맞춤형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0-126
----------	----------

제출연월일	2020. 11. 26.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농촌지역개발 신규사업 공모선정에 따른 사업추진의 능률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민간 위탁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의 다양한 활동조직들이 참여하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여 주민주도 마을만들기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치법규 입안원칙에 따라 용어 및 문장 정비(조례 전반)

나. 마을만들기 업무의 위탁근거 마련(안 제20조)

- 1) 현행) 지원센터 위탁
- 2) 신설) 마을만들기 업무 위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9조·제22조·제104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나. 예산조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20백만원 확보 예정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예산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0. 10. 30.~11. 19.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반영함(안 제11조제1항)

거창군 맞춤형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맞춤형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와”를 “다음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군”을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군수”를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5조 조 제목 “(다른 법령 등과 관계)”를 “(다른 조례와 관계)”로 하고 같은 조 중 “다른 법령이나”를 “다른”으로 “조례로”를 “조례에서”로 한다.

제7조 조 제목 “(마을만들기 사업)”을 “(사업 및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단일 또는 복합적으로 추진한다.
-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추진주체에게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제1항 중 “추진주체가”를 “추진주체가 제7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노력하여야 한다.”를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관련 실과소장”을 “마을만들기 관련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위탁 운영) 군수는 지원센터 및 마을만들기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추진할 능력이 있는 단체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21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u>다음 각 호와 같다.</u></p> <p>1. (생략)</p> <p>2. “주민”이란 <u>군에</u> 주소를 두거나, <u>군에</u> 소재한 사업장 등에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p> <p>3.~4. (생략)</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u>다음과 같다.</u></p> <p>1. (현행과 같음)</p> <p>2. “주민”이란 <u>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u>에 주소를 두거나, <u>군에</u> 소재한 사업장 등에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p> <p>3.~4. (현행과 같음)</p>
<p>제4조(책무) ① <u>군수는</u> 주민의 마을만들기를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만들기에 대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p> <p>②~③ (생략)</p> <p>③ <u>추진주체는</u> 사업의 계획에서 종료까지 모든 과정에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p>	<p>제4조(책무) ① <u>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u>는 주민의 마을만들기를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만들기에 대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p> <p>②~③ (현행과 같음)</p> <p>④ <u>추진주체는</u> 사업의 계획에서 종료까지 모든 과정에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p>
<p>제5조(다른 법령 등과 관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u>다른 법령이나 조례에</u>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u>조례로</u>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5조(다른 조례와 관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u>다른 조례에</u>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u>조례에서</u>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7조(마을만들기 사업) <u>군수는</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단일 또는 복합적으로 추진한다. 이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1. 로컬푸드 순환기능 강화 사업</p> <p>2. 문화·복지 활성화 사업</p> <p>3. 귀농·귀촌 활성화 사업</p> <p>4. 마을개발 활성화 사업</p> <p>5. 도농교류 활성화 사업</p> <p>6. 그 밖에 마을만들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p>	<p>제7조(사업 및 지원) ① <u>군수는</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단일 또는 복합적으로 추진한다.</p> <p>1. 로컬푸드 순환기능 강화 사업</p> <p>2. 문화·복지 활성화 사업</p> <p>3. 귀농·귀촌 활성화 사업</p> <p>4. 마을개발 활성화 사업</p> <p>5. 도농교류 활성화 사업</p> <p>6. 그 밖에 마을만들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p>

	<p><u><신 설></u>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추진주체에게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제8조(지원신청 등) ① 추진주체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제8조(지원신청 등) ① 추진주체가 제7조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의 위촉직 위원수가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u>노력하여야 한다.</u></p> <p>② (생략)</p> <p>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u>관련 실과 소장이</u> 되고, 위촉직 위원은 주민대표, 전문가 및 마을만들기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p> <p>④~⑤ (생략)</p>	<p>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의 위촉직 위원수가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u>하여야 한다.</u></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u>마을만들기 관련 부서의 장이</u> 되고, 위촉직 위원은 주민대표, 전문가 및 마을만들기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p> <p>④~⑤ (현행과 같음)</p>
<p>제16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u><삭 제></u></p>
<p>제20조(지원센터의 위탁) ① 군수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재위탁할 수 있다.</p> <p>③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p>	<p>제20조(위탁 운영) 군수는 지원센터 및 마을만들기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추진할 능력이 있는 단체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p>

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거창군 맞춤형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가. 비용발생 요인: 농촌지역개발 신규사업 공모선정에 따른 사업추진을 위한 민간위탁 비용
- 나. 관련 조문: 제20조(위탁 운영)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합 계
군비	120	120	120	0	0	360

- ### 3. 관련 의견: 농림축산식품부 신활력플러스사업 선정에 따라 사업추진의 능률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민간위탁 근거 마련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민간위탁 비용: 120백만원

작성자: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